

Advance unedited version

배포: 일반

2019년 8월 2일

원본: 영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자유권규약위원회(HRC)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보고 전 질의목록***A.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 및 개선사항을 포함한 대한민국 내 인권 관련 일반정보**

1. 위원회의 지난 최종견해(CCPR/C/KOR/CO/4)에 포함된 권고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또한 규약 선택의정서에 의거한 위원회의 견해(View)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마련했는지, 당사국과 관련해 채택된 각 견해,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많은 견해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2. 국내 법원이 자유권 규약 조항을 인용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최종 견해 채택 및 당사국의 후속보고 이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의 발전에 대해 보고하기 바란다.

B. 위원회 권고사항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포함하여, 자유권 규약 제1조부터 제27조의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자유권 규약 이행을 위한 헌법 및 사법 구조 (제2조)**

3. 지난 최종견해(9번 문단)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지명 및 임명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4. 지난 최종견해(11번 문단)와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당사국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기업이 그 활동에 있어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되는 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에 의한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하길 바란다.

* 위원회 제126차 회기(2019년 7월 1-26일)에서 채택

차별금지 (제2, 26조)

5. 지난 최종견해(13번 문단)와 관련해,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특히 소수인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기를 바란다. 또한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며, 인종과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같은 맥락에서 공적 또는 사적 행위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가해지는 제재와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알려주길 바란다.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제2, 7, 17, 26조)

6. 지난 최종견해(15번 문단) 및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CCPR/C/124/2, 10-12 쪽)와 관련하여, 군대 내를 포함하여,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LGBTI)에 대한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주길 바란다. 당사국이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제출한 첫 번째 부속문서에서 당사국이 제시한 정보(CCPR/C/KOR/CO/4/Add.1, 3-9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을 위해 취한 조치를 명시하라.

(a) 공식 행사 등에서 LGBTI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전환 치료’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b) LGBTI 보호를 위한 법적 틀 강화

(c)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 건수를 알려주기를 바람.

(d) 성전환의 법적 인정에 대한 접근(access) 개선

(e) 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성(性) 및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성정체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정확하며 나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과정 개발

남녀평등 (제2, 3, 25, 26조)

7. 지난 최종견해(17번 문단)와 관련해, 여성의 사회생활 참여를 증가시키고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성 지도자 및 여성 의사결정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여성에 대한 폭력 (제2, 3, 6, 7, 14, 17, 26조)

8. 지난 최종견해(19번 문단)와 관련해,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수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며, 피해 여성이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 접수 건수, 수사 개시 건수, 기소 건수, 선고된 판결에 대한 통계와,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된 구제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길 바란다.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경찰·사법부·검찰·지역대표·남녀 모두에 대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택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피해자들이 **대안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직장 내 성희롱과 여성 사생활 침해 목적의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택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합법화 결정 준수를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대테러조치(제9, 14, 15, 17조)

9. 지난 최종견해(21번 문단)와 관련해, 현 법률상 테러와 사이버 테러의 정의를 보고하고, 대테러법 및 실무가 자유권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오직 테러에만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생명권 (제2, 6조)

10. 지난 최종견해(23번 문단)와 관련해, 당사국이 자유권 규약의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 및 사형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

11. 지난 최종견해(25번 문단)와 관련해, 당사국 내 군대 등에서의 자살 건수에 대한 최신 분리통계를 제시하길 바란다. 자살 예방, 특히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자살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고문,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처우 및 처벌 금지 (제7, 9, 10, 14, 17조)

12. 지난 최종견해(27번 문단)와 관련해, 정신적 고문을 포함한 모든 고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을 독립적 범죄로 성문화하기 위해 취한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밤샘 조사의 활용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고문 또는 가혹 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고소 접수, 조사 시행, 기소, 유죄 판결 선고를 비롯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상 재활, 보상 등의 구제 관련 통계 자료도 제공하길 바란다.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보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

13. 지난 최종견해(31번 문단)와 관련해, 군대 내 인권남용 문제 해결 및 방지를 위한 조치와, 군대 내 인권남용 가해자 대상 진정 접수 및 조사 시행 건수와 처벌 관련 최신 통계를 제공하길 바란다. 또한 제기된 진정의 기밀성 유지와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영창’에 수감된 병사 통계와 영창 수감 방식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인신매매 및 노예 근절 (제3, 7, 8, 14조)

14. 지난 최종견해(41번 문단)와 관련해, 특히 인신매매에 대한 수요를 근절하는 등 인신매매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택한 조치와, 인신매매와 관련된 모든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가해자들은 적절하게 기소 및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취한 절차와,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길 바란다.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메커니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또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은폐하는 용도로 E-6 (예술흥행) 비자가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조치와,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 근거해 자유롭게 작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피구금자 및 수감 상황(제6, 7, 9, 10, 13, 14, 24조)

15. 지난 최종견해(29번 문단)와 관련해,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 절차가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대리인이 입원대상자의 바람과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정신병원 입원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적, 실질적 보호장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성과 비례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개인을 심각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써 가장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정신과적 구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16. 지난 최종견해(35번 문단)와 관련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서의 유치장 등 구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예방적 구금을 포함해 피구금자, 구금 시설에서 사망한 자, 사망 원인, 사망 관련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길 바란다. 수감자를 징계하기 위한 독방구금 및 독방구금 최대 일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

17. 지난 최종견해(33번 및 37번 문단)와 관련해, 구금된 자가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구금된 기간 동안 구금된 자의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길 바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구금기간 제한,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권, 송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가족과의 연락 등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구금 기간, 이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기 전 추방을 임시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18. 지난 최종견해(39번 문단)와 관련해, 출입국항을 포함하여 이민구금시설 내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해당 시설이 독립적인 정기적 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민구금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아동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지,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길 바란다. 공항 및 다른 출입국항에서 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자가 구금되었다는 보고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

부패 및 사법권 독립 (제2, 14조)

19. 사법부의 부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고,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민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그 효과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모니터링, 감시, 민간 통신 도청 (제17, 21조)

20. 지난 최종견해(43번 문단)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모든 국익 목적의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용자의 정보는 영장에 의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통신수사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확대하기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양심적 병역거부 (제17, 18조)

21. 지난 최종견해(45번 문단) 및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CCPR/C/124/2, 12-13 쪽), 당사국의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의 첫 번째 부칙에서 당사국이 제시한 정보 관련 주의사항(CCPR/C/KOR/CO/4/Add.1, 10-12번문항)과 관련해, 다음을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길 바란다.

(a) 병역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모두의 석방. 이와 관련해 여전히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길 바람

(b) 양심적 병역거부자 범죄 기록의 삭제, 보상 제공 및 개인정보의 비공개

(c)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인정 및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해 계류중인 헌법소원 진행상황 또는 결과 및 대체복무 기간 및 선발 절차 등과 같은 헌법소원 내용에 대해 알려주길 바람

표현의 자유 (제9, 19조)

22. 지난 최종견해(47번 및 49번 문단)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한 절차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법에 의거한 자의적 체포 및 구속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길 바란다.

결사의 자유와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23. 지난 최종견해(55번 문단)와 관련해, 자유권 규약 제22조의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 교사, 해고된 직원 등 모든 부문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된 모든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24. 지난 최종견해(51번 문단)와 관련해, 정당 해산 조치를 극히 제한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택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또한 교원 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권 규약 제25조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길 바란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와,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정지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이 자유권 규약 제25조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

평화적 집회 (제6, 7, 9, 21조)

25. 지난 최종견해(53번 문단) 및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CCPR/C/124/2, 13-14 쪽), 당사국의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보고서의 첫 번째 부칙에서 당사국이 제시한 정보 관련 주의사항(CCPR/C/KOR/CO/4/Add.1, 13-18번문항)과 관련해 (1) 집회참가자를 관리하는 경찰에 대한 훈련 (2) 자유권 규약 제21조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 이와 관련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의 평화적 집회 권리 제한과 관련된 보고에 대한 의견 (3) 자유권 규약 준수를 위한 당사국의 강제력 사용 규제 검토 조치 (4) 69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책임자 기소,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 집회 주최측 및 참가자, 특히 언론인 및 인권옹호자가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관련 정보도 제공하길 바란다.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제2, 3, 7, 14, 16, 23, 25, 26조)

26. 당사국 내 망명 신청자,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 통계를 제공하고, 이주민, 망명 신청자,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 근절과 출생 등록 및 의료보장, 주거, 교육, 고용 등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관련 헌법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자유권 규약상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하길 바란다. 「난민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포함한 난민 지위 및 망명 인정 결정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길 바란다.

27. 지난 최종견해(51번 문단)와 관련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뿐만 아니라 사망, 결혼,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